

## 광전자(주) 정보보호방침

광전자 주식회사(이하 “회사”라 함) 전 임직원은 회사 정보를 보호해야 할 중요한 자산으로 인식하고, 다음의 정보보호방침에 따라 정보자산의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.

첫째, 중요 정보 자산에 대한 접근시 사용자 식별 및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하고, 사용자는 불법적인 접근을 시도하거나, 패스워드 등을 다른 사람과 공유해서는 안되며, 부서장의 승인 없이 외부에 유출 또는 공개해서는 안된다.

둘째, 전 임직원은 정보보호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각자의 직무와 부합하는 적절한 수준의 정보보호 교육을 받아야 한다.

셋째, 정보보호와 관련된 모든 규정, 규칙 및 지침은 자산에 대한 기밀성·무결성·가용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수립, 검토, 시행되어야 하며, 이러한 일련의 활동들은 정보보호 담당부서에 의해 일관성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.

넷째, 회사의 모든 자산은 그 가치와 중요도에 따라 등급을 분류하여 각 등급별로 적절한 절차에 의거 관리되어야 한다.

다섯째, 회사의 모든 정보자산은 인가된 인원만 접근 가능하도록 적절한 조치가 취해져야 하며 중요 정보자산을 운영·관리 하는 지역은 비인가자의 접근, 정전, 화재, 수해 등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.

여섯째, 회사의 정보 자산이 침해사고 및 내·외부자의 고의적이거나 우발적인 침입에 의해 손상을 입었을 경우에도 회사는 사업을 지속할 수 있어야 하며 신속히 정보 자산을 복구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침해사고 대응계획이 수립되어 관리되어야 한다.

일곱째, 회사 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기록을 유지·관리함으로써 향후 정보시스템의 운영 계획의 수립 및 침해사고 발생시 그 기록이 반영 되도록 중요 정보 자산에 대해서는 작성자, 작성일자, 사용자가 명확히 지정되어야 하고, 사용시에는 사용 실적의 추적이 가능하도록 관리되어야 한다.

여덟째, 유해한 소프트웨어로부터 회사의 정보시스템을 보호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정보시스템 사용으로 인하여 정보자산이 외부로 유출되거나 정보시스템의 성능이 저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

아홉째, 회사의 모든 정보보호 활동은 상급기관의 관련 지침, 지적재산권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등을 준수해야 하며 정보보호 활동이 지침과 절차에 의해 올바르게 수행되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점검한다.

**광전자(주) 대표이사 사장**